|  |  |  |
| --- | --- | --- |
| **재정부, 세무총국의**  **경외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3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이하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관철시켜 수행하기 위하여 경외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아래 소득은 중국 경외가 원천인 소득이다.  1.1 재직, 고용, 계약이행 등으로 인해 중국 경외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  1.2 중국 경외 기업 및 기타 조직이 지급 및 부담하는 원고료 소득  1.3 각종 특허권이 중국 경외에서 사용을 허가 받아 이를 통해 취득한 소득  1.4 중국 경외에서 생산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소득  1.5 중국 경외 기업, 기타 조직 및 비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이자, 주식배당금, 배당 소득  1.6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해주어 중국 경외에서 사용하여 취득한 소득  1.7 중국 경외로 양도한 부동산, 중국 경외 기업 및 기타 조직에 대한 투자로 구성된 주식, 지분권 및 기타 권익성자산(이하 ‘권익성자산’) 또는 중국 경외에서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  단, 중국 경외 기업 및 기타 조직에 대한 투자로 구성된 권익성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권익성자산이 양도되기 3년 전(연속 36개월분) 어느 기간에 피투자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자산 공정시장가액 5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경우, 취득한 소득은 중국 경내가 원천인 소득이 된다.  1.8 중국 경외 기업, 기타 조직 및 비거주자 개인이 지급 및 부담한 우발소득  1.9 재정부, 세무총국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2. 거주자 개인은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 방법에 따라 당기 경내와 경외소득 과세액을 계산한다.  2.1 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외가 원천인 종합소득에 대해 경내 종합소득과 합병하여 과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2 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외가 원천인 경영소득에 대해 경내 종합소득과 합병하여 과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거주자 개인이 경외가 원천인 경영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손은 그 경내 또는 타 국가(지역)의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원천이 동일한 국가(지역) 이후연도의 경영소득은 중국 세법 규정에 따라 보전할 수 있다.  2.3 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외가 원천인 이자, 주식배당금 및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과 우발소득(이하 ‘기타로 분류한 소득’)에 대해 경내 소득과 합병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과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거주자 개인이 1개 납세연도 내 중국 경외가 원천인 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 국가(지역) 세수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 경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 세액은 공제 한도액 내에서 해당 납세연도 과세액 중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거주자 개인의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종합소득, 경영소득 및 기타로 분류한 소득 항목의 과세액이 그 공제 한도액이며,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3.1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종합소득의 공제 한도액 = 중국 경내와 경외 종합소득은 본 공고 제2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액 × 원천인 해당 국가(지역)의 종합소득 수입액 ÷ 중국 경내와 경외 종합소득 수입액 합계  3.2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경영소득의 공제 한도액 = 중국 경내와 경외 경영소득은 본 공고 제2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경영소득 과세액 × 원천인 해당 국가(지역)의 경영소득 과세소득액 ÷ 중국 경내와 경외 경영소득 과세소득액 합계  3.3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기타로 분류한 소득의 공제 한도액 = 해당 국가(지역)의 기타로 분류한 소득은 본 공고 제2조에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액  3.4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소득의 공제 한도액 = 원천인 해당 국가(지역) 종합소득 공제 한도액 + 원천인 해당 국가(지역) 경영소득 공제 한도액 + 원천인 해당 국가(지역)의 기타로 분류한 소득의 공제 한도액  4. 공제 가능한 경외소득세 세액이란 거주가 개인이 취득한 경외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원천 국가(지역) 세수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또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 성격의 세액을 의미한다. 공제 가능한 경외소득 세액에 아래 유형은 포함하지 않는다.  4.1 경외 소득세법 법률에 따라 오납 또는 과징수에 해당되는 경외소득세 세액  4.2 중국 정부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내지(중국 대륙)가(이)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이중과제방지안배(이하 ‘세수협정’)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아야 하는 경외소득세 세액  4.3 경외소득세 과소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인해 추가된 이자, 체납금 또는 벌금  4.4 경외 소득세 납세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경외 과세주체로부터 실제로 환급 또는 보상을 받은 경외소득세 세금  4.5 중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면세된 경외소득에 대해 부담한 경외소득세 세금  5. 거주자 개인은 중국과 세수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지역) 세수법률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향유하고, 또한 해당 면세 또는 감세 금액은 세수협정 양보 조항 규정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간주해 중국의 과세액에서 공제할 경우, 해당 면세 또는 감세 금액은 거주자 개인이 실제 납부한 경외소득세 세액으로 볼 수 있기에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고한다.  6. 거주자 개인이 1개 납세연도 내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이 본 공고 제3조에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가(지역)의 해당 납세연도 소득의 공제 한도액 보다 낮을 경우, 실제 납부세액을 공제액으로 삼아 공제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지역)의 해당 납세연도 소득의 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액 내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초과 부분은 이후 5개 납세연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7.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내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8.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경외 소득은 중국 경내에 재직, 채용단위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 경내에 재직, 채용단위가 없을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 또는 중국 경내 경상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를 처리한다. 호적 소재지와 중국 경내 경상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중 1개 지역을 주관세무기관으로 선택하여 납세신고를 처리한다. 중국 경내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 경상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를 처리한다.  9.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경외소득의 경외납세연도와 양력연도가 불일치할 경우, 경외소득을 취득한 경외납세연도 마지막 날이 속한 양력연도가 경외소득에 대응하는 중국의 납세연도이다.  10. 거주가 개인이 경외소득 세액공제를 신고할 시,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경외과세주체가 발급한 세금 귀속연도의 납세완납증명서, 세금납부서 또는 납세기록 등의 납세 증빙을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에 부합하는 납세 증빙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주자 개인이 경외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세액공제를 진행하지 않고, 이후 납세연도에서 납세 증빙을 취득해 경외소득세 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경외소득 귀속 납세연도에서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단, 소급 연도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경외소득을 취득한 날로부터 5개연도 내 경외과세주체가 발급한 세금 귀속 납세연도 납세 증명에 명시된 실제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납부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처리하고, 세액 체납금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으며 이자도 돌려주지 않는다.  납세자가 확실히 납세 증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외소득 납세신고표(또는 경외과세주체가 확인한 납세통지서) 및 대응하는 은행 납부 증빙을 근거로 경외소득 공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11. 거주자 개인이 경내기업, 단위, 기타 조직(이하 ‘파출단위’)에서 경외로 파견되어 근무해 취득한 급여소득 또는 노무보수소득에 대해 파출단위 또는 기타 경내단위가 지급 또는 부담하는 경우, 파출단위 또는 기타 경내단위는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거주자 개인이 파출단위에서 경외로 파견되어 근무해 취득한 급여소득 또는 노무보수소득에 대해 경외단위가 지급 또는 부담하는 경우, 만약 경외단위가 경외에 재직, 고용된 중방기구(이하 ‘중방기구’)일 경우에는 경외 재직, 고용된 중방기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파출단위가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중방기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경외단위가 중방기구가 아닐 경우, 파출단위는 다음 해 2월 28일 전까지 그 주관세무기관에 경외 파견 인원 상황을 제출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경외 파견 인원의 성명, 신분증 유형 및 신분증 번호, 직무, 파견한 국가와 지역, 경외업무단위 명칭과 주소, 파견기한, 경내∙외 수입 및 납세상황 등을 포함한다.  중방기구는 중국 경내기업, 사업단위, 기타 경제조직 및 국가기관에 소속된 경외분지기구, 자회사, 대사관, 대표처 등을 포함한다.  12. 거주자 개인이 원천이 경외인 소득을 취득하거나 또는 실제 이미 경외에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이 인민폐 이외 화폐일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2조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3.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납부신고, 경외소득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및 자료 전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개인납세 신용관리에 올린다.  14. 본 공고는 2019년도 및 그 이후 연도 세수처리 사안에 적용한다. 이전연도 공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세액은 본 공고 제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래 문건 또는 문건 조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14.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스톡옵션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05]35호) 제3조  14.2 <국가세무총국의 경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에 따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 [1994] 44호)  14.3 <국가세무총국의 기업과 개인의 외화수입이 어떻게 인민폐로 환산되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1995]173호)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1월 17일 |  | **财政部、税务总局**  **关于境外所得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0年第3号  为贯彻落实《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和《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以下称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现将境外所得有关个人所得税政策公告如下：  一、下列所得，为来源于中国境外的所得：  （一）因任职、受雇、履约等在中国境外提供劳务取得的所得；  （二）中国境外企业以及其他组织支付且负担的稿酬所得；  （三）许可各种特许权在中国境外使用而取得的所得；  （四）在中国境外从事生产、经营活动而取得的与生产、经营活动相关的所得；  （五）从中国境外企业、其他组织以及非居民个人取得的利息、股息、红利所得；  （六）将财产出租给承租人在中国境外使用而取得的所得；  （七）转让中国境外的不动产、转让对中国境外企业以及其他组织投资形成的股票、股权以及其他权益性资产（以下称权益性资产）或者在中国境外转让其他财产取得的所得。  但转让对中国境外企业以及其他组织投资形成的权益性资产，该权益性资产被转让前三年（连续36个公历月份）内的任一时间，被投资企业或其他组织的资产公允价值50%以上直接或间接来自位于中国境内的不动产的，取得的所得为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  （八）中国境外企业、其他组织以及非居民个人支付且负担的偶然所得；  （九）财政部、税务总局另有规定的，按照相关规定执行。  二、居民个人应当依照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规定，按照以下方法计算当期境内和境外所得应纳税额：  （一）居民个人来源于中国境外的综合所得，应当与境内综合所得合并计算应纳税额；  （二）居民个人来源于中国境外的经营所得，应当与境内经营所得合并计算应纳税额。居民个人来源于境外的经营所得，按照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的有关规定计算的亏损，不得抵减其境内或他国（地区）的应纳税所得额，但可以用来源于同一国家（地区）以后年度的经营所得按中国税法规定弥补；  （三）居民个人来源于中国境外的利息、股息、红利所得，财产租赁所得，财产转让所得和偶然所得（以下称其他分类所得），不与境内所得合并，应当分别单独计算应纳税额。  三、居民个人在一个纳税年度内来源于中国境外的所得，依照所得来源国家（地区）税收法律规定在中国境外已缴纳的所得税税额允许在抵免限额内从其该纳税年度应纳税额中抵免。  居民个人来源于一国（地区）的综合所得、经营所得以及其他分类所得项目的应纳税额为其抵免限额，按照下列公式计算：  （一）来源于一国（地区）综合所得的抵免限额＝中国境内和境外综合所得依照本公告第二条规定计算的综合所得应纳税额×来源于该国（地区）的综合所得收入额÷中国境内和境外综合所得收入额合计  （二）来源于一国（地区）经营所得的抵免限额＝中国境内和境外经营所得依照本公告第二条规定计算的经营所得应纳税额×来源于该国（地区）的经营所得应纳税所得额÷中国境内和境外经营所得应纳税所得额合计  （三）来源于一国（地区）其他分类所得的抵免限额＝该国（地区）的其他分类所得依照本公告第二条规定计算的应纳税额  （四）来源于一国（地区）所得的抵免限额=来源于该国（地区）综合所得抵免限额+来源于该国（地区）经营所得抵免限额+来源于该国（地区）其他分类所得抵免限额  四、可抵免的境外所得税税额，是指居民个人取得境外所得，依照该所得来源国（地区）税收法律应当缴纳且实际已经缴纳的所得税性质的税额。可抵免的境外所得税额不包括以下情形：  （一）按照境外所得税法律属于错缴或错征的境外所得税税额；  （二）按照我国政府签订的避免双重征税协定以及内地与香港、澳门签订的避免双重征税安排（以下统称税收协定）规定不应征收的境外所得税税额；  （三）因少缴或迟缴境外所得税而追加的利息、滞纳金或罚款；  （四）境外所得税纳税人或者其利害关系人从境外征税主体得到实际返还或补偿的境外所得税税款；  （五）按照我国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规定，已经免税的境外所得负担的境外所得税税款。  五、居民个人从与我国签订税收协定的国家（地区）取得的所得，按照该国（地区）税收法律享受免税或减税待遇，且该免税或减税的数额按照税收协定饶让条款规定应视同已缴税额在中国的应纳税额中抵免的，该免税或减税数额可作为居民个人实际缴纳的境外所得税税额按规定申报税收抵免。  六、居民个人一个纳税年度内来源于一国（地区）的所得实际已经缴纳的所得税税额，低于依照本公告第三条规定计算出的来源于该国（地区）该纳税年度所得的抵免限额的，应以实际缴纳税额作为抵免额进行抵免；超过来源于该国（地区）该纳税年度所得的抵免限额的，应在限额内进行抵免，超过部分可以在以后五个纳税年度内结转抵免。  七、居民个人从中国境外取得所得的，应当在取得所得的次年3月1日至6月30日内申报纳税。  八、居民个人取得境外所得，应当向中国境内任职、受雇单位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在中国境内没有任职、受雇单位的，向户籍所在地或中国境内经常居住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户籍所在地与中国境内经常居住地不一致的，选择其中一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在中国境内没有户籍的，向中国境内经常居住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  九、居民个人取得境外所得的境外纳税年度与公历年度不一致的，取得境外所得的境外纳税年度最后一日所在的公历年度，为境外所得对应的我国纳税年度。  十、居民个人申报境外所得税收抵免时，除另有规定外，应当提供境外征税主体出具的税款所属年度的完税证明、税收缴款书或者纳税记录等纳税凭证，未提供符合要求的纳税凭证，不予抵免。  居民个人已申报境外所得、未进行税收抵免，在以后纳税年度取得纳税凭证并申报境外所得税收抵免的，可以追溯至该境外所得所属纳税年度进行抵免，但追溯年度不得超过五年。自取得该项境外所得的五个年度内，境外征税主体出具的税款所属纳税年度纳税凭证载明的实际缴纳税额发生变化的，按实际缴纳税额重新计算并办理补退税，不加收税收滞纳金，不退还利息。  纳税人确实无法提供纳税凭证的，可同时凭境外所得纳税申报表（或者境外征税主体确认的缴税通知书）以及对应的银行缴款凭证办理境外所得抵免事宜。  十一、居民个人被境内企业、单位、其他组织（以下称派出单位）派往境外工作，取得的工资薪金所得或者劳务报酬所得，由派出单位或者其他境内单位支付或负担的，派出单位或者其他境内单位应按照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规定预扣预缴税款。  居民个人被派出单位派往境外工作，取得的工资薪金所得或者劳务报酬所得，由境外单位支付或负担的，如果境外单位为境外任职、受雇的中方机构（以下称中方机构）的，可以由境外任职、受雇的中方机构预扣税款，并委托派出单位向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中方机构未预扣税款的或者境外单位不是中方机构的，派出单位应当于次年2月28日前向其主管税务机关报送外派人员情况，包括：外派人员的姓名、身份证件类型及身份证件号码、职务、派往国家和地区、境外工作单位名称和地址、派遣期限、境内外收入及缴税情况等。  中方机构包括中国境内企业、事业单位、其他经济组织以及国家机关所属的境外分支机构、子公司、使（领）馆、代表处等。  十二、居民个人取得来源于境外的所得或者实际已经在境外缴纳的所得税税额为人民币以外货币，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第三十二条折合计算。  十三、纳税人和扣缴义务人未按本公告规定申报缴纳、扣缴境外所得个人所得税以及报送资料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和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等有关规定处理，并按规定纳入个人纳税信用管理。  十四、本公告适用于2019年度及以后年度税收处理事宜。以前年度尚未抵免完毕的税额，可按本公告第六条规定处理。下列文件或文件条款同时废止：  1.《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股票期权所得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5〕35号）第三条  2.《国家税务总局关于境外所得征收个人所得税若干问题的通知》（国税发〔1994〕44号）  3.《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和个人的外币收入如何折合成人民币计算缴纳税款问题的通知》（国税发〔1995〕173号）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20年1月17日 |